

2016 Final세무회계 정오표(8판1쇄 2016.2.25)

2016년 Final 세무회계연습에 대한 수험생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오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2016. 5. 10. 주민규 드림.

페이지	행(위치)	종 전	수 정						
I -70	위 14~15	5,000,000(증여재산공제) = <u>145,000,000</u> (145,000,000 - 100,000,000) × 20% = <u>19,000,000</u>	10,000,000(증여재산공제) = <u>140,000,000</u> (140,000,000 - 100,000,000) × 20% = <u>18,000,000</u>						
II-4	위 3	~인이다. (단서 추가)	인이다(<u>1년을 365일로 간주함</u>).						
II-49	위 7	자료 <u>2</u> 의 A기계장치	자료 <u>3</u> 의 A기계장치						
II-53	위 7	① <u>상각범위액</u> : 40,000,000	① <u>회사상각액</u> : 40,000,000						
	아래 12	① <u>상각범위액</u> : 6,000,000	① <u>회사상각액</u> : 6,000,000						
II-104	아래 2	매월 말 수령하기로	매월 말 <u>500,000원을</u> 수령하기로						
II-134	위 8 ~9	① 잡비 중 ~	② 잡비 중 ~						
		② 문제와 ~	③ 문제와 ~						
II-136	위 4	(대) 세금과공과 <u>3,000,000</u>	(대) 세금과공과 <u>1,000,000</u>						
II-201	위 2	다음은 <u>주권</u> 상장법인인 ~	다음은 <u>비상장</u> 법인인 ~						
	위 4	추가	<u>1년을 365일로 간주함</u> .						
II-236	아래 2	~ (주장미의 <u>제20기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u> 재해손실세액공제액을~	~ (주장미의 재해손실세액공제액을 ~						
II-241	위 3	근로소득금액 3,000,000원	근로소득금액 3,000,000원(<u>총급여액은 9,000,000원으로 가정함</u>)						
	위 4	(배당가산액 1,540,000원 포함)	(배당가산액 1,540,000원 포함, <u>비영업대금의 이익은 3,000,000원으로 가정함</u>)						
II-243	아래 4	의제매입세액은 <u>150,000</u>	의제매입세액은 <u>573,000</u>						
II-246	위 4	520,000,000 ⁽¹⁾ × 5% ~ = <u>△36,000,000</u> → 0	520,000,000 ⁽¹⁾ × 0% ~ = <u>△62,000,000</u> → 0						
II-249	아래 2	<table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30%; text-align: center;">감가상각비</td> <td style="width: 30%; text-align: center;"><u>3,579,155</u></td> <td style="width: 40%; text-align: center;">유보</td> </tr> </table>	감가상각비	<u>3,579,155</u>	유보	<table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30%; text-align: center;">감가상각비</td> <td style="width: 30%; text-align: center;"><u>579,155</u></td> <td style="width: 40%; text-align: center;">유보</td> </tr> </table>	감가상각비	<u>579,155</u>	유보
감가상각비	<u>3,579,155</u>	유보							
감가상각비	<u>579,155</u>	유보							
II-250	위 7	① 회사계상액 : <u>0</u>	① 회사계상액 : <u>3,000,000</u>						
	위 9	③ 시부인액 : △ <u>3,579,155</u> (손금산입, △유보)	③ 시부인액 : △ <u>579,155</u> (손금산입, △유보)						
II-256	아래 1	<table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60%; text-align: center;">의제매입세액 공제액</td> <td style="width: 40%; text-align: center;"><u>542,000</u></td> </tr> </table>	의제매입세액 공제액	<u>542,000</u>	<table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60%; text-align: center;">의제매입세액 공제액</td> <td style="width: 40%; text-align: center;"><u>250,529</u></td> </tr> </table>	의제매입세액 공제액	<u>250,529</u>		
의제매입세액 공제액	<u>542,000</u>								
의제매입세액 공제액	<u>250,529</u>								
II-257	위 13	3. 공제한도 : 120,000,000* × <u>30%</u> × $\frac{2}{102}$ - <u>150,000 = 555,882</u>	3. 공제한도 : 120,000,000* × <u>35%</u> × $\frac{2}{102}$ - <u>573,000 = 250,529</u>						
	위 15	~ (한도) <u>555,882</u>] = <u>542,000</u>	~ (한도) <u>250,529</u>] = <u>250,529</u>						
II-258	아래 16	2. 매입세액 : <u>12,860,000</u>	2. 매입세액 : <u>12,246,408</u>						
	아래 14	(2) 재활용폐자원 : <u>5,180,000</u>	(2) 재활용폐자원 : <u>4,566,408</u>						
	아래 12	② 고 철 ^(주) : <u>1,580,000</u>	② 고 철 ^(주) : <u>966,408</u>						
	아래 11	3. 납부세액 : 1. - 2. = <u>5,140,000</u>	3. 납부세액 : 1. - 2. = <u>5,753,592</u>						
	아래 9	(1) 과세기간분 : Min [(1), (2)] × <u>5/105</u> = <u>2,300,000</u>	(1) 과세기간분 : Min [(1), (2)] × <u>3/103</u> = <u>1,406,796</u>						
	아래 6	(2) 예정신고분 : 15,120,000 × <u>5/105</u> = (-) <u>720,000</u>	(2) 예정신고분 : 15,120,000 × <u>3/103</u> = (-) <u>440,388</u>						
아래 5	(3) 확정신고분 [(1) - (2)] <u>1,580,000</u>	(3) 확정신고분 [(1) - (2)] <u>966,408</u>							
II-284	아래 2	한계세율이 <u>15%</u> 이므로	한계세율이 <u>6%</u> 이므로						
II-288	아래 14	~ 보유하고 있던 중, <u>갑(주)</u> 가 2016	~ 보유하고 있던 중, <u>주A</u> 가 2016						
II-290	위 13	(대) 전기요류수정 <u>손실</u> (잉여금) 5,000,000	(대) 전기요류수정 <u>이익</u> (잉여금) 5,000,000						
II-291	아래 10	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단서 추가)	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u>단, 당기말 현재까지 공사대금 수령액은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u>						
II-306	아래 14	지 <u>않아 미발급에 해당하지만</u> 실제로 거래사실이 ~	지 <u>않았지만</u> 실제로 거래사실이 ~						

페이지	행(위치)	종 전	수 정																												
II-319	위 12	미지급기부금 5,000,000 유보	종전 내용을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으로 옮겨주세요.																												
II-321	아래 6	【문제 3】	【문제 4】																												
III-20	아래 3	부동산중개수수료 및 기타 양도비용 2010. 3. 5.	부동산중개수수료 및 기타 양도비용 2016. 10. 1.																												
III-34	아래 6	출 자 10	출 자 10,000,000																												
III-69	위 10~16	<table border="1"> <tr><td>4. 양도차익</td><td>3,265,000,000</td></tr> <tr><td>5. 비과세대상 양도차익</td><td>(489,750,000)</td></tr> <tr><td>6. 과세대상 양도차익</td><td>2,775,250,000</td></tr> <tr><td>7. 장기보유특별공제</td><td>(995,825,000)</td></tr> <tr><td>8. 양도소득금액</td><td>1,779,425,000</td></tr> <tr><td>9. 양도소득기본공제</td><td>(2,500,000)</td></tr> <tr><td>10. 양도소득과세표준</td><td>1,776,925,000</td></tr> </table>	4. 양도차익	3,265,000,000	5. 비과세대상 양도차익	(489,750,000)	6. 과세대상 양도차익	2,775,250,000	7. 장기보유특별공제	(995,825,000)	8. 양도소득금액	1,779,425,000	9.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000)	10. 양도소득과세표준	1,776,925,000	<table border="1"> <tr><td>4. 양도차익</td><td>3,265,000,000</td></tr> <tr><td>5. 비과세대상 양도차익</td><td>(441,000,000)</td></tr> <tr><td>6. 과세대상 양도차익</td><td>2,824,000,000</td></tr> <tr><td>7. 장기보유특별공제</td><td>(994,200,000)</td></tr> <tr><td>8. 양도소득금액</td><td>1,829,800,000</td></tr> <tr><td>9. 양도소득기본공제</td><td>(2,500,000)</td></tr> <tr><td>10. 양도소득과세표준</td><td>1,827,300,000</td></tr> </table>	4. 양도차익	3,265,000,000	5. 비과세대상 양도차익	(441,000,000)	6. 과세대상 양도차익	2,824,000,000	7. 장기보유특별공제	(994,200,000)	8. 양도소득금액	1,829,800,000	9.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000)	10. 양도소득과세표준	1,827,300,000
4. 양도차익	3,265,000,000																														
5. 비과세대상 양도차익	(489,750,000)																														
6. 과세대상 양도차익	2,775,250,000																														
7. 장기보유특별공제	(995,825,000)																														
8. 양도소득금액	1,779,425,000																														
9.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000)																														
10. 양도소득과세표준	1,776,925,000																														
4. 양도차익	3,265,000,000																														
5. 비과세대상 양도차익	(441,000,000)																														
6. 과세대상 양도차익	2,824,000,000																														
7. 장기보유특별공제	(994,200,000)																														
8. 양도소득금액	1,829,800,000																														
9.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000)																														
10. 양도소득과세표준	1,827,300,000																														
III-69	아래 7~1까지의 종전내용을 다음으로 전부 수정	<p>3. 비과세대상 양도차익(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p> <p>① 주택분 양도차익 : $2,940,000,000 * \frac{240m^2}{960m^2} = 735,000,000$ $* 6,000,000,000 - 3,000,000,000 - 60,000,000 = 2,940,000,000$</p> <p>② 비과세대상 양도차익 : $735,000,000 \times \frac{900,000,000}{1,500,000,000*} = 441,000,000$ $* 주택의 양도가액 : 6,000,000,000 \times \frac{240m^2}{960m^2} = 1,500,000,000$</p> <p>4. 장기보유특별공제 : ① + ② = 994,200,000</p> <p>① 1세대 1주택 : $(735,000,000 - 441,000,000) \times 80\% = 235,200,000$</p> <p>② 위 외의 건물 : $(3,265,000,000 - 735,000,000) \times 30\% = 759,000,000$</p>																													
III-133	위 6	(4) 세액공제 : 2,927,000	(4) 세액공제 : 2,995,500																												
III-209	위 8	계 25,788,235	계 25,886,274																												
III-233	아래 10~9	$\{300,000,000 + 1,000,000,000 \times \frac{270,000,000}{900,000,000} + 100,000,000 + (4,000,000 + \sim$	$\{250,000,000 + 1,000,000,000 \times \frac{270,000,000}{900,000,000} + 100,000,000 + (50,000,000 + 4,000,000 + \sim$																												
III-245	위 14	- 30,000,000(증여재산공제) = 570,000,000	- 50,000,000(증여재산공제) = 550,000,000																												
	위 15	(570,000,000 - 500,000,000) × 30% = 111,000,000	(550,000,000 - 500,000,000) × 30% = 105,000,000																												
	위 18	정할 경우의 증여세액(111,000,000원)보다 ~	정할 경우의 증여세액(105,000,000원)보다 ~																												
III-321	위 13	자본잉여금 9,375,000	자본잉여금 6,250,000																												
III-324	아래 3~2	$(2,500주 \times 25\% \times 35,000) - 50,000,000 \times 25\% = 21,875,000 - 12,500,000 = 9,375,000$	$(2,500주 \times 25\% \times 35,000) - (50,000,000 + 12,500,000*) \times 25\% = 21,875,000 - 15,625,000 = 6,250,000$ * 5,000주 × 2,500 = 12,500,000																												

- 끝 -